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94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의자 : 권영진 · 이만희 · 임종득
김소희 · 엄태영 · 김상훈
윤한홍 · 조승환 · 이종배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

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도심융합특구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도심융합특구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

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 ----- -----. ③ ~ ⑩ (생 략)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 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 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도심용합특구 조성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 1항에 따라 도심용합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u> <u>14. 「도심용합특구 조성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도심용합 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 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